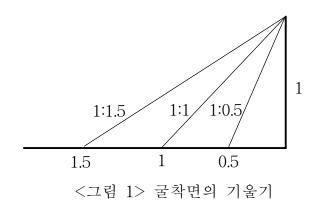
## C - 15 - 2017

- (라) "흙막이지보공"이라 함은 굴착작업에 있어서 토사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가시설물을 말한다.
- (마) "굴착면"이라 함은 지반의 굴착에 의하여 생긴 수직 또는 경사면을 말한다.
- (바) "기울기"라 함은 굴착사면의 전단파괴나 무너짐의 위험이 없는 상황 하에서 사면이 형성하는 연직방향 길이에 대한 수평방향 길이의 비를 말하며 <그림 1>과 같이 표현한다.



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 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4. 관로매설공사 작업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

- (1) 공사전 각 세부작업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, 중점관리대상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2) 관로매설공사 작업계획은 작업장소의 제반 여건과 설계도서(설계도면, 시방서 등)를 검토하여 굴착공법 선정 및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3) 관로매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·기구 등은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